

# 비윤리적 취재 · 보도 유형 및 해결 방안 에 대한 단상

엄 기 열

대구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건국대 영어영문학과 졸
- 미 California State Univ. Fresno 저널리즘 석사 및 미 Univ. of Iowa 언론학 박사
- 언론인권센터 정보공개시민운동본부 본부장
- 논문 및 저서 : 「한국 언론 윤리법제의 현실과 쟁점」, 「알권리의 개념적 가능성과 한계: 알 권리에 대한 1989년 헌법 재판소 판결 이전의 확설에 관하여」 외 다수

## I. 서론

지난해 말 MBC <PD수첩>이 황우석 교수팀의 배아줄기세포의 진위여부에 대해 김선중 연구원을 인터뷰하며 드러난 취재과정에서의 회유, 협박성 언급 및 유도질문, 몰래카메라의 사용과 취재협조 대가 약속 그리고 연이어 YTN이 배아줄기세포가 곧 '국익'이라는 생각으로 '황우석 살리기' 식의 폭로성 보도를 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 전체는 배아줄기세포의 존재여부에 대해 잠시나마 정신적 혼돈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네티즌의 찬반 댓글, 대통령의 언급, <PD수첩>에 대한 광고해지, MBC의 사과 그리고 <PD수첩>의 방송중단 결정 등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 메이저 신문들도 <PD수첩>의 비윤리적 취재를 부각

시키며 방송국 PD들이 제작하는 시사프로그램들과 MBC에 대한 총체적 비판으로 연결하여 보도하였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황우석 교수의 세련된 '언론플레이'에 우리나라 언론은 적극적인 협력자로서 또는 소극적인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황우석 신화 만들기'에 충실히 일익을 담당했다고도 보겠다. 역으로 이러한 '언론플레이'에 우리나라 언론이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 언론의 비윤리적 취재 · 보도 관행에 있다고도 할 수 있겠다.

비윤리적 취재 · 보도 유형은 ① 금품수수, ② 신분 사칭 취재와 몰래카메라 사용, ③ 오보와 날조 및 표절 등을 들 수 있겠다.<sup>1)</sup> 이번 배아줄기세포 진위 논란 보도를 계기로 비윤리적 취재 · 보도의 유형을 위의 3가지로 대별하여 그 개선방안을 우리나라와 미

1) 미디어 윤리의 범주에는 경·언 유착성 이익의 상충, 외설과 폭력성, 오프 더 레코드와 엠바고,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인종과 성(性) 차별, 재난보도에 따른 인격권 침해 그리고 광고와 홍보의 영역에서 야기되는 윤리성과 비윤리성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위의 3가지로만 구분지어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 미디어 윤리성에 대해서는 김옥조(2004), 「미디어윤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pp.166-174, pp.296-302, pp.397-434, pp.469-495과 김우룡(2000), 「미디어윤리」 서울: 나남출판, pp.53-86, pp.163-170, pp.217-270, pp.285-314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비윤리적 취재 유형은 크게 금품수수,  
신분사칭취재와 몰래카메라 사용,  
오보와 날조 및 표절 등으로 나눌 수 있어**

국 등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비윤리적 취재 · 보도에 대한 두 가지 조금은 상반된 견해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언론의 취재 · 보도 윤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경우는 물론이려니와 인격적인 폭력이라고 할 비윤리적인 취재에 대하여 타율규제적 장치를 마련하여 비윤리적 취재를 근절하여야 한다는 강경론이 있는 반면,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와 각종 비리와 같은 거악(巨惡)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소악(小惡)이라고 할 비윤리적 취재 · 보도는 어느 정도 용인되어야 하므로 비교형량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엄밀히 따져보면 강경론자의 입장도 언론의 자유라는 가치보다 취재원의 인격적 가치를 놓고 절대적인 방식으로 비교형량해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든 경우를 통괄한 법적 · 윤리적 경계선 긋기가 가능하지도 또한 바람직하지도 않는 만큼 비윤리적 취재 · 보도를 위의 3가지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우리의 시대적 윤리성에 맞는 상황별 그리고 사안별 비교형량(ad hoc balancing)을 하는 것이 건전한 윤리적 해법을 모색하고 비윤리적 취재 · 보도를 근절하는 접근방법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II. 비윤리적 취재 · 보도 유형

### 1. 금품수수

‘춘지 저널리즘’이라는 말이 상징하듯 우리 언론

계의 춘지관행은 그 뿌리가 매우 깊다.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그리고 한국기자협회가 독립신문 창간 100주년을 기념하며 1996년 개정한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 실천요강에는 언론인의 품위에 대한 언급(강령 제7조)과 구체적 가이드라인(실천요강 제15조)이 각각 설정되어 있다. 신문윤리 실천요강 제15조 제1항에는 “언론사와 언론인은 취재, 보도, 평론, 편집에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로부터의 금품, 향응, 무료 여행 초대, 취재여행의 경비, 제품 및 상품권, 고가의 기념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다. 또한 부당한 금전 지불 금지를 명시한 제15조 제3항에는 “언론인은 반사회적 범죄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등 비윤리적 방법에 의해 취재하거나 기타 자료를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가장 비윤리적이며 우리나라 언론계의 병폐인 춘지관행은 이즈음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과연 우리 언론인들은 금품수수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또 정치적 밀월관계를 추구한 적은 없었나? 1996년 한국언론학회가 전국의 문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백 20명 응답내용분석) 결과 기자들의 ‘춘지 수수행위가 사라졌다’는 문항에 4.9%가 ‘그렇다’고 대답하고 64.2%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바와 같이 춘지관행은 언론과 문학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속되어왔다.<sup>2)</sup> 또한 문화관광부의 의뢰를 받아 언론연구원(현 언론재단)이 1998년에 언론 접촉이 잦은 관공서, 지방자치단체, 기업, 자영업 종사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중복응답)조사에서, 신문구독 강요(80.5%)와 광고 강매(54.4%)에 이어 춘지 및 향

2) 한겨레, 1996. 9. 18.자. 손석춘, “문인들 ‘한국 언론 문제 많다’/언론학회 설문결과”.

응 강요(32.5%)와 약점을 미끼로 한 금품요구(20.3%)가 직접피해의 유형으로 분류될 정도로 그 피해가 줄어들지 않았다.<sup>3)</sup>

오히려 이 시기에는 촌지 저널리즘을 대체할만한 '언론장학생'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되었다. 1992년 대선을 앞두고 상당수의 언론은 노골적으로 김영삼 후보를 지지하였고, 그해 9월 <기자협회보>는 당시 연합통신(현 연합뉴스) 부국장이 언론사 주요간부를 접촉한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어 김영삼 후보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을 폭로함으로써 '언론장학생'이라는 말이 알려지게 되었다.<sup>4)</sup>

또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6년 검찰의 5·18 수사 과정에서 퇴임 이후 지속적으로 언론인들을 "관리"하였고 자신이 조성한 수백억 원의 비자금 일부를 언론인들에게 주었다고 진술함으로써 언론계는 자금수수 혐의자 명단의 공개를 검찰에 요구하였다. 조선일보는 1996년 2월 6일 『언론계 집단명예의 문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권력에 협력한 언론인들의 청산작업의 일환으로 전 씨의 '언론장학생'이 어떤 기사를 쓰고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했는지를 밝혀 언론 현장에서 물러나게 하는 일이야말로 언론들이 스스로 "집단명예"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하였다.<sup>5)</sup>

지금까지 실체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전두환 장학생, YS장학생 그리고 '위스키&캐시'로 회자되

는 박지원 장학생은 특정 정치인이 몇몇 기자를 자기 사람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를 나타낸다.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 야심을 가진 기자들이 의도적으로 정치인에 접근하기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물론 현실적으로 개인적인 친분이 없이는 정보원으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기도 하지만, 1990년대는 물론 2006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둔 현 시점에서 적지 않은 언론인이 정치권 진입을 고려하는 상황이고 보면 촌지 저널리즘이라고 할 '기능적 유착관계'가 '정치적 상응관계'로 발전(?)되어가는 우리나라의 정언유착 관계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겠다.

문제는 과연 이러한 언론인들이 주요 정치인들과 물리적, 정치적 행보를 함께 하며 작성한 기사와 논평이 공정하고 객관적일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객관성은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고 변명할 수는 있겠지만 촌지수수와 참모역할 그리고 공천으로 이어지는 공생적 관계는 비윤리적인 취재·보도 관행의 전형이라 하겠다.<sup>6)</sup>

언론인이 언론인으로서 정년을 맞이하는 풍토가 자리 잡고, 또 이러한 언론인이 진정한 언론인으로서 존경을 받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 한 정치와 언론의 비윤리적인 공생적 관계는 단절되기 어렵다고 본다.<sup>7)</sup>

정치인이 선거를 위한 정책홍보에 돈과 정성을 쏟

3) 한겨레. 1998. 9. 11.자. 이강혁, '절반 이상이 손 내미는 언론 직·간접 경험/언론 접촉층 피해 조사'.

4) 서울신문. 2000. 12. 20. 자. "부쩍 늘어난 언론 공작 사례/언론장악해야 권력 잡는다?".

5) 한겨레. 1996. 2. 7. 자. "일부신문 '전두환 언론장학생' 출신 검찰에 포화".

6) 문화일보. 1999. 10. 30. 자. 특별취재팀, "<언론문건 파문> 정-언 '비리 커넥션' 위험수위 넘었다".

7) 필자는 학위논문에서 필요한 기초자료 조사를 위해 메인 주제 살고 있던 제임스 러셀 위긴즈(James Russell Wiggins)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1950년대 초에 알권리 운동을 주도한 위긴즈는 벤 브레들리의 워싱턴포스트 전임 편집장으로 워싱턴포스트가 지금의 위상을 갖게 한 인물로 평가된다. 케네디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였던 위긴즈는 일년 남짓한 기간 동안 존슨 대통령 시절 유엔대사를 지냈고, 이를 두고 위긴즈는 매우 후회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 워싱턴포스트의 우호적인 부고(訃告)보도와는 달리 경쟁사인 뉴욕타임스는 위긴즈가 비록 메인 주의 작은 도시인 엘즈워스(Ellesworth)에서 생을 마치는 날까지 신문을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고의 가치로 여겨야 할 언론인의 유엔대사직 수행은 진정한 언론인이 할 일은 아니라는 듯한 언급을 한다. 진정으로 존경받는 언론인상(像)의 구현을 위한 치열한 비판적 기록정신이라고 하겠다.

### 비윤리적 관행에 대한 징계조치 뿐만 아니라 징계의 결과까지도 철저히 공개해야

는 일은 미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정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핵심적 교육정책인 '낙제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에 대한 흑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산하기 위해 전국 신디케이트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보수적 흑인 방송인 암스트롱 윌리엄스에게 24만 1천 달러를 주며 방송에서 NCLB에 대해 정기적으로 언급하고 교육부 장관을 인터뷰할 것을 요구하였고, 윌리엄스는 흑인 방송인 단체인 ABF(America's Black Forum)를 통해 프로듀서들에게 NCLB를 정기적으로 다루도록 독려하며 방송인 스티브 하비를 설득해 교육부 장관을 방송에 두 번 출연시켰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윌리엄스 자신은 이러한 "거래"가 비윤리적으로 비쳐질 수 있겠지만 자신은 NCLB가 옳았기 때문에 행한 일이라고 하였다.

민주당 소속 상·하원 의원들은 부시 대통령에게 "뉴스가 정부 정책의 편을 들도록 언론인들을 매수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서한을 보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밝힌 <USA투데이>는 물론 대다수 미국신문은 윌리엄스의 칼럼 게재를 중단하였고, 워싱턴포스트도 사실을 통해 "국민의 세금을 여론 조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수준을 넘어 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의회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의회 차원의 조사의 유무와 상관없이 윌리엄스는 저널리스트로서의 신망을 잃었고 향후 방송인으로서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다.<sup>8)</sup>

우리나라 방송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외주제작

비리 의혹, 홍보성 프로그램을 방영하며 받는 돈과 향응 등이 언급된다. 이러한 방송가의 비윤리적 관행에 대해 KBS 정연주 사장은 2003년 4월 취임사에서 "촌지를 받았다거나 돈과 관련된 불미한 이야기가 들리면 가차 없이 퇴출시킬 것"이라며 "비윤리적이고 부정한 사례에 관련된 분들은 스스로 KBS를 떠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정 사장이 취임한지 4개월 후, <TV, 책을 말하다> 담당 PD는 해외 취재에 가족을 동반하여 공금을 사용한 사실이 동행한 교수의 글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sup>9)</sup>

또한 2005년 8월에는 KBS 제작국 간부들과 PD들이 외주제작업체로부터 명절 때마다 선물과 상품권을 받고 '야외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와 MBC 고위 간부들과 기자들이 인력송출업체 브로커로부터 수천만 원 대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MBC는 <신강균의 사실은>이라는 프로그램 담당자들이 고액의 핸드백을 받았지만 윤리적 갈등 끝에 결국 돌려주었다는 이상호 기자의 고백과 아울러 'X파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였는가에 대한 진위여부 때문에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에 큰 타격을 입었다.

문제는 이러한 비윤리적 관행이 밝혀지면 책임PD 또는 방송사가 사과문을 게재하고, 감사실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밝히려는 조사를 진행시킨다는 보도는 있으나 금품수수와 향응을 제공받은 기자와 간부들에 대한 방송사의 인사위원회의 결정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의 신뢰도를 제고시킨다

8) 서울신문. 2005. 1. 10. 자. "부시 정부 '언론인 매수' 파문".

9) 경향신문. 2003. 8. 29. 자. "PD 외유성 출장 일파만파".

는 장기적인 목적으로 정정보도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신문들이 늘어나는 추세인 요즘 금품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은 비윤리적인 언론인들에 대한 징계 결과도 반드시 보도함으로써 언론계 내부정화를 위해서는 물론이려니와 금품 및 향응제공이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브로커나 홍보성 보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지시켜야 하겠다.

촌지 저널리즘이 한 국가의 후진성을 나타낸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미국의 퍼듀 대학에서 박사과정에 있는 러시아 언론인 카테리나 체스우라(Katerina Tsetsura)와 노던 아이오아 대학의 딘 크루케버그(Dean Kruckeberg) 교수가 미국의 홍보연구소와 공동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기사계재를 전제로 금품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은 곳은 국민과 언론인의 교육수준이 낮고 언론인의 급여가 낮은 나라, 즉 중남미와 동유럽에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사실 이 조사가 진행된 계기는 러시아의 한 홍보회사가 가전매장 개장에 관한 허위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보낸 뒤 12개 신문사가 기사계재를 대가로 돈을 요구했음을 폭로하는 함정 기사를 통해서 러시아 언론의 상당수가 철저히 부패되었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었다고 한다.<sup>10)</sup>

기사계재를 전제로 돈이 결부된 사건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다. 2003년 7월 <미디어오늘>은 <월간중앙>이 굿모닝시티의 사장 인터뷰 기사를 실는 조건으로 1100만 원에 달하는 액수의 <월간중앙> 1년 치 구독료를 군과 관공서를 대신해서 지불하였다는 보도를 하였다.<sup>11)</sup> 평소 <미디어오늘>과 같은 마이너 언론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조선일보>는 양

측의 공방을 기사로 전하면서 “월간중앙 ‘굿모닝’ 돈 받고 기사 실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월간중앙> 측은 해명서에서 <미디어오늘>과 일부 언론의 일방적인 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으나, <미디어오늘>은 굿모닝시티 내부문건과 <월간중앙> 관계자와의 교차 확인과정을 거쳐 기사화하였기 때문에 사실관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디어오늘>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직접 돈이 전달되지는 않지만 특정 단체 또는 국가에서 그 비용을 전적으로 제공하는 언론인 연수 프로그램의 윤리적 측면도 새로이 생각해 볼 사안이다. 이라크 파병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찬반논쟁에서 KBS <미디어포커스>가 밝힌 바에 따르면 파병찬성의 입장을 보인 언론인들 중 몇몇은 주한미대사관과 주한미군사령부가 매년 하와이에서 운영하는 한국 언론인 연수프로그램을 다녀왔다고 한다. 이를 두고 진보적 성향의 양문석 전국언론노조 정책위원은 <시민의 신문>에서 이러한 언론인을 “노예근성”이 있는 “친미 언론 장학생”이라고 하면서 이들이 전체 우리나라 언론인들의 얼굴에 “떡칠”을 하였다고 비판하였다.<sup>12)</sup>

향후 전방위적인 취재경쟁, 속보경쟁 그리고 특종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만큼 기자들이 취재원과 정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도 비윤리적 취재행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뉴욕타임스>의 베테랑 중군기자인 존 번스(John Burns)는 미국 기자들이, 그것도 메이저 신문사의 기자들이 취재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그리고 바그다드에 10일 이상 머무르는 기자들이

10) <International Press Institute Global Journalist>, 2003년 1호, 백민수(편역), “위기의 언론윤리/동유럽, 중남미 언론 ‘촌지가 광고비보다 경제적!’”, <Media Worldwide>, 2003년 6월호: 14-17쪽에서 재인용.

11) 미디어오늘. 2003. 7. 23. 자. “굿모닝시티 돈 언론계 유입”.

12) 시민의 신문. 2003. 12. 13. 자. 양문석, “친미 언론 장학생과 왜곡 언론”.

## 금품수수에 대한 언론사 차원의 자율 규제를 넘어 보다 엄격한 타율적 방법으로 규제하고 처벌해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에이즈 테스트를 면제받고 비자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는 대가로 이라크군 장교들과 대사관에 뇌물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다.<sup>13)</sup>

우리나라의 윤리강령에는 기자들이 제공받는 촌지에 대한 자율적 금지조항은 있지만 기자들이 취재원에게 제공하는 금품에 대한 규정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2003년 1월에 <뉴욕타임스>가 발표한 윤리강령에는 “인터뷰나 미공개 문건을 제공받는 대가로 돈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언론인 단체 또는 개별 언론사가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개정할 때, 반드시 개정강령에 포함시켜야 할 항목이라고 하겠다.

금품 및 촌지수수에 대해 고(故) 팽원순 교수는 1992년에 발간한 <저널리즘 비평> 제6호에 기고한 “촌지와 법적규제의 문제”라는 글에서 촌지를 명절에 오가는 ‘떡값형’과 특정사건의 보도금지를 위한 ‘뇌물형’의 촌지로 구분하여, 수서사건 등에서와 같이 업체가 사건보도를 막기 위해서 기자나 언론사 간부들에게 주는 촌지는 촌지를 받은 언론인은 물론 촌지를 제공한 사람도 처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형법상의 ‘수뢰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에 의한 뇌물수수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인에 대한 뇌물죄라고 할 수 있는 “배임수재죄”를 적용하여야 한다면서, 팽 교수는 “적어도 뇌물로서의 성격이 뚜렷한 촌지에 대한 처벌을 강행하지 않고서는 오랫동안

우리 언론을 병들게 해온 독소를 뿌리 뽑을 수 없다”고 하였다. 요즈음 선거과정에서 10만 원이라도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들은 당선에 무효화될 정도로 엄격한 법 규정이 적용되는 시기에 기사계재를 전제로 한 촌지수수는 물론이려니와 떡값형 촌지에 대해서도 윤리강령에 따른 언론사 차원의 자율적 규제가 아니라 보다 엄격한 타율적인 방법으로 규제하고 처벌하여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sup>14)</sup>

### 2. 신분사칭 취재와 몰래카메라 사용

국민, 즉 독자들의 알고자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변명으로 언론인들이 행하는 비윤리적인 취재의 유형 중 하나는 신분사칭 취재 및 몰래카메라 사용이다. 신분사칭은 많은 기자들이 조금 더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취재원들에게 강압적으로 정보를 요구했던 취재 방식인데 그 구체적인 사례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스포츠신문 가운데서 가장 신생매체인 <굿데이>가 한 개그우먼을 남편이 폭행한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의사 가운과 청진기 등의 소품을 준비하고 회진의사를 가장해 병실에 들어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가짜의사임이 탄로나 각서까지 썼지만 잠시 나눈 대화내용을 특종인양 보도함으로써 신분사칭이라는 취재방식의 비윤리성에 주목하게 되었다.<sup>15)</sup>

13) <Editor&Publisher>, 2003년 12월 15일. 송은아(편역), “개인의 이익을 위해 동료를 팔다/이라크전 중군기자들의 비윤리적 행동 폭로한 NYT 존 번스 기자”, <Media Worldwide>, 2004년 2월호: 42-45쪽에서 재인용. 유명인과의 인터뷰에 고액을 지불하는 전통을 가진 유럽언론들을 비판하였던 미국 언론들도 닉슨 전 대통령(CBS, 50만 불),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혼외정사를 하였다고 주장했던 제니퍼 플라워스(타블로이드 대중지 Star, 15만 불) 그리고 로드니 킹 구타사건에 대한 소송 중에 돈을 받지 않고는 인터뷰하지 않겠다는 LA 경찰 2명(도나휴쇼, 2만 5천 불 씩) 등에서 나타났듯이 특종과 방송의 시청률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경향이 있다.

14) 대법원 1991. 1. 15. 90도2257. (가수출연 청탁사건),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2002. 3. 21. (벤처기업 홍보 기사 작성사건).

15) 프레시안. 2003. 2. 14. 자. 이영태, “이경실 폭행사건이 가십거리인가/<미디어비평> 스포츠 신문들의 비윤리적 보도태도”.

현재 배아줄기세포 배양 및 논문작성에 관련된 연구자들을 검찰이 소환하여 조사하고 있지만 <PD수첩>의 PD가 김선중 연구원을 인터뷰하면서 조만간 검찰조사가 진행될 것이고 사실대로 말하면 선처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한 것은 검찰과의 친밀한 관계를 은근히 과시하면서 기자 자신의 위상을 검사의 그것과 거의 동일시하는 신분사칭의 한 유형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신분사칭의 문제는 다시금 윤리적 잣대의 눈금아래 위치하게 되었다고 보겠다.

사실 신분사칭의 취재방식은 ‘폭로 저널리즘’의 역사적 측면에서 그 뿌리가 매우 깊다. 우리가 상업적이고 원색적인 언론을 비난할 때 흔히 사용하는 ‘엘로 저널리즘’의 독특한 취재방식 중의 하나는 신분사칭이었다. 다시 말해 신분사칭은 기자가 정치·사회적인 강자의 신분을 사칭할 때만을 뜻하지 않고 청소부 또는 웨이터의 신분으로 엘리트들의 연회장에 들어가 이들이 어떠한 비이성적(?) 행동을 하는가를 취재하는데 종종 사용되곤 하였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빈부의 양극화 현상이 극심하였던 미국에서 그 당시 최상류 계급의 변호사인 워렌(Samuel D. Warren)과 브렌다이스(Louis D. Brandeis)의 사생활도 신분을 속인 기자들의 보도로 인해서 이들을 당혹하게 만들었고, 사생활 침해를 상품화하는 것에 대한 학문적인 반격으로 이들은 그 유명한 “프라이버시의 권리”라는 논문을 1890년 하버드 법 학지(Harvard Law Review)에 발표하게 되는 것이다.

론 스미스(Ron Smith)는 신분사칭형의 취재에는 ㉠ 비리를 폭로하려고 사건을 연출하는(staging events) 능동적 속임(active deception)과 ㉡ 자신이 기자라는 사실을 단순히 알리지 않는 수동적 속임(passive deception) 그리고 ㉢ 다른 지위의 사람인 것

처럼 가장하기(masquerading)로 구분하였다. 1890년대 정신이상자로 행세하며 “정신병동에서의 10일”이라는 기사를 3차례에 걸쳐 연재한 넬리 블라이(Nellie Bly)는 최초의 사칭형 잠입취재 기사로서 두 번째의 유형이고, 1973년 선거감독원 행세를 하여 선거부정을 폭로한 기사로 폴리처상을 수상한 경우는 세 번째 유형의 신분사칭이며, 시카고 선타임즈의 두 기자가 1979년 미라지(Mirage)라는 술집을 인수하여 시카고 시의 공무원들과 회계사들이 뇌물을 요구하고 세금을 탈루한다는 기사와 사진을 4주간에 걸쳐서 게재한 것은 첫 번째 유형이겠다.

스미스는 이 3가지 유형 모두 미국에서 거의 100년 동안 사회의 부조리와 비리를 폭로하는데 사용되었지만 1979년 미라지 시리즈 기사가 사칭의 비윤리성 때문에 폴리처상을 받지 못하게 되고 1982년의 잠입취재 기사 또한 수상하지 못하는 것을 계기로 1990년 초에 이르러서는 위의 3가지 형태의 신분사칭형 취재관행은, 몰래카메라의 취재형태로 방송에는 유행하게 되지만, 적어도 권위 있는 일간지에서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였다.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의 부조리와 비리를 폭로하는데 있어서 기자가 자신의 동기를 숨기고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사회 부조리를 적나라하게 폭로하여 큰 반향을 일으킨 이 두 시리즈 기사에 폴리처상을 수여하지 않은 폴리처상 심사위원들의 생각은 이러한 신분사칭 기사에 대해 상을 계속 수여할 경우 향후 신분사칭이라는 비윤리적 관행을 지속적으로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16)</sup>

지난 일 년 동안 릴레이 방식으로 대구·경북지역에 주재하는 40명의 신문·방송기자들이 인터넷신문 <평화뉴스>에 “기자들의 고백”이라는 자성적 연재물에 참여하였고, <영남일보> 유명철 편집국장의 “지도

16) Ron F. Smith, *Groping for Ethics in Journalism*, Ames: Iowa State University, 1999, pp. 213-220.

‘하급자 윤리학’과 ‘윤리 타임아웃 제도’ 등을  
 통해 사칭취재의 상황에 따른 윤리적 판단  
 가능하게 할 수 있어

층에 소금을 뿌려라”라는 글을 끝으로 최근 마치게 되었다. 유 편집국장은 자신의 대학교 신문 대선배의 경험담을 소개하면서, 1961년 5·16 직후 그 선배가 청소부 복장을 하고 총장실에 미리 들어가 총장이 교내 상황과 교수들의 성향을 군 요원에게 보고한 사실과 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좌중을 전율하게 한” 취재담을 소개하였다. 비록 기사화 되지 않았다고는 하는 사족을 달기는 했지만 청소부 복장으로 잠입하여 취재한 것이므로 이 또한 사칭의 한 유형이라고 보겠다.

사실 <평화뉴스>의 “기자들의 고백”이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계기가 된 것은 <한국일보> 전준호 기자의 “기자의 사칭은 무죄?”라는 자성적 글이 실리고 나서이다. 자신의 글에서 전 기자는 사칭이 자신이 배우고 체득한 취재방식이기는 하지만 지극히 비윤리적이라고 응변하고 있다. 론 스미스의 분류로는 ‘가장하기’에 속하는 전 기자의 고백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형사사건의 증거물로 녹취 중인 테이프의 내용을 취재한 녹취사무소에서 경찰사칭과 윤리적으로 반성할만한 칠순 노인으로부터 ‘변사자 사진 구하기’의 형사사칭 일화가 담겨있다. “기자라고 하면 경계심을 갖다가도 권력기관을 사칭하면 쉽게 이야기보따리를 푸는 분위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사칭이] 습관화” 되었다는 전 기자의 고백에는 기자의 신분사칭이 “취재편의”를 위해 “기자로 있는 동안에는 치유할 수 없는 고질병”인 것이다.<sup>17)</sup>

우리나라 개별 언론사의 윤리강령을 살펴보면, 사칭취재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문윤리 실천요강 제2조

제1항에는 취재를 위한 사칭과 위장 및 문서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그러나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와 다른 수단을 통해 취재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여 기자 자신이 상황별로 윤리적 판단을 내릴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어느 정도의 비윤리적 사칭취재가 어떠한 정도의 사회적 비리를 파헤쳐 공익에 이바지해야 정당화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 <뉴욕타임스>의 윤리강령은 음식·여행 담당 기자가 식당 및 숙박시설을 취재하는 경우와 같이 기자의 신분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수동적으로 취재대상을 속이게 되는) 경우의 신분 위장적인 취재는 일견 당연한 것으로 규정한다. 그러므로 기자가 무숙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의 생활을 취재하는 경우와 같은 위장취재는 허용할 수 있으나 적극적인 형태의 ‘사건연출’ 방식 또는 ‘가장하기’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도 쉽게 추론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점에서 ‘하급자 윤리학’(low power ethics)과 ‘윤리 타임아웃’ 제도는 사칭취재의 상황에 따른 윤리적 판단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보겠다. 10년 동안 기자생활을 한 후 현재 웨스턴미시간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크리스티안(Sue Ellen Christian)이 제기한 ‘하급자 윤리학’이라는 개념은 기존의 저널리즘 윤리학 교과서들이 다루는 윤리적 문제들이 지나치게 편집국 고위 간부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신입 및 초년병 기자들이 일상에서 겪게 되는 사소하지만 다양한 상황에 맞는 윤리적 결정에 필요한 대답은 찾기

17) <www.pn.co.kr> 사이트의 우측 하단부 배너에 개별 “기자들의 고백” 기사를 읽을 수 있게 되어있다.

어렵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실로 복잡하고 다양한 윤리적 결정이 필요한 상황들을 수집하고 또 가정해서 일선 기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sup>18)</sup>

또한 ‘윤리 타임아웃’은 기자와 데스크가 사안별로 윤리적 판단을 할 때, 담당기자와 데스크뿐만 아니라 편집국 내에서 상시적으로 누구라도 ‘윤리 타임아웃’을 신청하면 주위의 동료들이 진지하게 취재·보도상의 윤리적 측면을 공동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미국 미네소타주의 〈세인트 클라우드 타임스〉에서 처음으로 도입하고 시행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윤리적 취재를 위한 사전점검 제도인 ‘윤리 타임아웃’은 우리나라의 상명하복적인 (언론계) 문화에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사칭취재의 윤리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해 볼 수도 있는 장치라고 하겠다.<sup>19)</sup>

‘윤리 타임아웃’ 제도는 향후 방송의 몰래카메라 사용에 대한 윤리적 판단도 언론사 내부의 토론을 통해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몰래카메라의 ‘몰래’라는 말이 의미하듯 몰래카메라의 사용 또한 사칭취재의 한 유형이다. 그러나 몰래카메라의 사용은 위의 3가지 유형의 사칭취재보다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더욱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취재를 위해 몰래카메라를 들이대는(?) 순간 취재원의 사생활권 침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견 방송 프로그램의 성패에 대한 판단은 제작자

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시청률에 의해 결정되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몰래카메라의 사용은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우리나라 주요 방송사의 경우 오락성 프로그램은 물론이려니와 사회고발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 〈카메라 출동〉, 〈시사매거진 2580〉 등에서 몰래카메라가 너무 과도하게 사용되면서 초상권 및 사생활권 침해와 명예훼손 등의 위법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방송위원회는 2004년 6월 기존의 방송심의규정 제19조 제3항의 “방송은 흥미를 목적으로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를 “흥미를 목적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한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사회고발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비리고발과 권력에 대한 감시가 줄어들 것이며, 과도한 규제는 언론의 자유라는 가치와 상반되는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몰래카메라 사용의 윤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번 개정은 방송위원회가 몰래카메라 사용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며 그 사용을 자제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몰래카메라 사용에 따른 법적 이슈들은 초상권 및 사생활권 침해와 명예훼손 그리고 무단침입 또는 위장취업인 경우에는 사기죄 등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위장취업 등의 사칭취재를 당한 업체나 몰래카메라 또는 녹음기에 녹화 및 녹음된 취재원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재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sup>20)</sup> 그러나 미국의

18) 〈Quill〉 2003년 4월호. 천세익(편역), “위기의 언론윤리/윤리교육, 신입 기자 눈높이 맞춰 실용성 강화해야.” 〈Media Worldwide〉, 2003년 6월호.

19) 김종수(편역), “‘윤리 타임 아웃’과 ‘스탠더드 에디터’ 운영.” 〈Media Worldwide〉, 2005년 6월호: 24-27쪽.

20)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7. 8. 7. 선고 (신입생 환영회 보도, 초상권 및 촬영거절권 침해판결);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음성변조 및 모자이크처리의 미숙으로 인한 취재원의 신원노출에 따른 피해에 대해 언론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 1. 11. 선고 99나66474 (바이올린 교수 개인 교습실 내의 불법레슨 보도 사생활권 침해판결); 2005년 초 〈조선일보〉의 한 기자가 패스트 푸드점에 위장취업한 뒤 문제점을 기사화하였지만 그 패스트 푸드점은 소송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설원태, “취재기법과 언론윤리”, 〈기자협회보〉, 2005년 8월 31일.

### 몰래카메라 사용에 앞서 정당성과 대체 수단 여부 등을 먼저 고려해야

경우 권위 일간지들이 사칭취재를 자제하기 시작할 시점인 1990년대 초부터 방송에서의 몰래카메라의 사용은 보편화(?)되었고, 1997년 위장취재 및 몰래카메라 사용의 방법으로 식품체인점 '푸드 라이온(Food Lion)'이 유효기간이 지난 고기를 판다는 사실을 보도한 ABC 방송의 충격적인 보도를 기점으로 몰래카메라를 사용한 취재·보도의 법적·윤리적 이슈에 대한 논쟁이 한층 뜨겁게 달아오르게 되었다. 푸드 라이온이 ABC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1심인 지방법원의 배심원들이 5백 50만 달러라는 거액을 벌금으로 부과함에 따라 더욱 국민적 관심을 끈 이 사건은 연방대법원이 심의를 거부함으로써 고등법원인 순회법원의 판결로 종결되었다.

지방법원의 판결을 부분적으로 확정하고 부분적으로는 무효화시킨 이 사건의 최종판결에 의하면, ㉠ 위장취업을 사기(fraud)로 볼 수 없으며, ㉡ 몰래카메라를 사용한 것은 약속이행 의무(duty of loyalty)를 파기한 것이고, ㉢ 약속이행 의무를 파기한 것은 식품체인점을 들어가기 위한 기자의 동의(consent)를 무효화한 것이므로 무단침입(trespass)죄를 범한 것이며, ㉣ 수정헌법 제1조는 사기나 약속이행 의무파기에 대한 배상을 금하는 정도까지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아니지만, ㉤ 푸드 라이온 식품체인점은 (비록 주가가 폭락하고 고객이 현격히 줄었지만) 뉴스 프로그램의 방송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sup>21)</sup>

'푸드 라이온' 사건의 판결문에 언급된 유사사건의 판결을 보면 몰래카메라의 사용이 허용될 수 있

는 기준을 도출할 수 있다. 즉, 몰래카메라를 사용해서 취제한 정보가 중대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다른 방법으로는 동일한 정보를 습득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에는 정당화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언론인들이 유사한 상황에서 취할 정상적인 취재행위를 하였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조건들은 향후 사회고발 프로그램의 취재에 있어서 몰래카메라를 사용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sup>22)</sup>

몰래카메라 사용에 따른 문제는 5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 해답에 근접할 수 있다고 스미스는 말한다. 첫째, 단순히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사용하였는가? 둘째, 비리를 폭로한다는 목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속임수를 사용하는 등의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셋째, 사생활권 침해는 없었는가? 넷째, 취재를 위해 몰래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나? 다섯째, 보도될 내용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가? 몰래카메라를 사용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 판단은 취재 전에 이러한 질문을 기자와 PD들 자신이 던져봄으로써 자체적으로 내릴 수 있다고 본다.<sup>23)</sup>

'푸드 라이온' 판결에서 도출한 기준과 스미스의 자문적 점검요목은 인터넷상의 온라인 취재의 한 유형이라고 할 '털킹'(lurking)에 대한 윤리성 및 적법성을 따지는데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털킹이란 도청과 비슷한 형태로서 기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거짓으로 밝힌 채 대화방이나 토론 포럼

21) Food Lion, Inc. v. Capital Cities/ABC, Inc., 194 F.3d 505 (1999).

22) 방송의 선정성 및 폭력성과 재연프로그램 그리고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방영에 따른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은 다른 사회적 가치와 비교할 때 그 당위성과 정당성의 측면에서 비윤리적인 것이라고 총별적으로 (categorically) 규정할 수 있겠다.

23) Ron F. Smith, *Groping for Ethics in Journalism*, pp. 220-226.

또는 뉴스그룹에 가입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대화방이나 토론 포럼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대화내용이나 의견을 외부인이 볼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개된 장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생활권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고 대화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기사에 인용하는 행위는 언론윤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기초조사나 취재 대상이 공적으로 상당한 무게를 지닌 인물이나 집단일 경우엔나 링크를 통한 취재가 정당성을 지닐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특정한 조직이나 집단을 취재하기 위해서 요즈음 인터넷을 통해 매우 다양한 소스로부터 더욱 신속하고 쉽사리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만큼 링크를 통한 취재의 윤리성에 대한 판단 또한 언론사 자체적으로 더욱 엄격하게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보겠다.<sup>24)</sup>

### 3. 오보와 날조 및 표절

오보란 보도된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진실과 다른 보도를 뜻하고, 날조는 오보에 더해 작성자의 '고의성'에 의한 "작문성 오보"를 뜻한다. 또한 표절은 남의 기사나 사실 등을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훔쳐 쓰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이러한 유형의 보도들에 대한 윤리적 판단은 비교적 쉽고 분명하게 내릴 수 있다.<sup>25)</sup> 날조와 표절은 데스크에 기사를 송고

하기 전까지의 단계인 작성시기부터 그 동기(motive)가 지극히 비윤리적인 보도행위라는데 비난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단순오보의 경우에는 그것도 편집 또는 인쇄나 방송 단계에서 발행한 경우에는 취재단계의 윤리성 유무에 대한 비판을 하기가 그리 쉽지 않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보에 대한 언론사 내의 엄격한 윤리강령과 그에 따른 구제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오보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가 날조 및 표절보다 더 광범위하고 구체적이기 때문이다.

날조보도의 대표적인 사례인 <워싱턴포스트>의 자넷 쿡(Janet Cooke)이 날조한 '지미의 세계(Jimmy's World)'와 <보스턴글로브>의 패트리샤 스미스(Patricia Smith)가 자신의 칼럼에 등장하는 인물 및 인용을 조작한 것과 같은 날조보도는 보도되는 기사 자체가 허구의 사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의 구체적인 당사자는 독자들은 물론이려니와 날조보도를 작성한 기자 자신과 이러한 보도를 냄으로써 인하여 신뢰성에 타격을 입은 해당 언론사가 된다. 또한 통신사 기사의 내용을 자사 기자가 취재한 것으로 바이라인(by-line)을 달아 보도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한 표절보도의 경우, 그 피해자는 표절을 당한 원저자와 표절을 한 기자 및 이를 보도한 언론사로 국한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날조와 표절의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해당 기자와 편집간부를 해임시키고 정정보도를 게재함으로써 날조와 표절의 비윤리성에 대한 대내외적인 반성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sup>26)</sup>

우리나라 언론사들은 그동안 표절에 대해 비교적

24) "Digital Dilemmas: Ethical Issues for Online Media Professionals," <Online Journalism Review>, 2003년 10월 1일, 홈페이지. 홍수원(번역), "언론인, 대화방 내용 몰래 엿볼 수 있다? : 언론인 취재도 언론윤리기본원칙 지켜야," <Media Worldwide>, 2003년 12월호: 7-10쪽에서 재인용.

25) 김옥조(2004), 앞의 책, p.203: p.219.

26) NBC 방송의 GM 픽업트릭 결함 조작보도 사건의 경우에는 날조보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는 GM이었다. GM은 NBC가 성의 있는 사과방송을 한다는 조건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였고, NBC 뉴스의 고위 간부들과 사장은 이 날조보도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다. 조작보도의 비윤리성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NBC가 이들에게 사퇴보다 더욱 엄격한 형태인 해임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고 한다. 설원태, "미국 언론보도의 정정 메커니즘," <저널리즘 평론: 오보>, 한국언론재단, 2003년 1호: 175-215쪽.

표절, 날조, 오보 등은 언론인과 언론사  
양측에게 신뢰성 상실 등의 타격을  
줄 수 있어

관대한(?) 조치를 취했다. 외국 언론사들에 비해 기자 수는 적는데 메워야하는 지면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보도자료를 보고 최소한의 확인취재도 하지 않고 기사를 쓰다보면 표절보도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표절 의혹이 일더라도 이슈화되지 못하고 대충 시간의 흐름에 맡기고 그냥 넘어갔던 것이 하나의 관행으로 되었다. 그러나 우리 언론도 신뢰도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쌓아야 한다고 인지하면서 이제는 표절에 대해 과거와는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조선일보>는 2005년 9월 28일자 신문 2면에 실은 “기사 표절 사과합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에서 표절이 “중대한 잘못”임을 시인하고 독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표절방지를 위해 “내부적으로 문책하는 한편 취재와 기사작성에 더욱 세심한 주의와 정성을 쏟겠다”고 하였다.<sup>27)</sup> 이보다 앞서 <문화일보>도 표절기사에 대해 사과문을 제1면에 게재하면서 “엄중한 문책”과 “출고기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할 것이라고 하였다.<sup>28)</sup>

이와 같은 개별 언론사의 즉각적인 사과문 게재와 표절에 대한 엄중한 문책은 표절의 비윤리성에 대해 우리 언론이 통렬하게 자각하게 되었음을 반영한다. 앞으로 우리 언론(학)계는 표절의 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징계수준에 대한 논의를 전개시켜야 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일본에서의 표절에 대한 언론사 내의

징계는 표절한 기자의 해고는 물론 편집간부들이 경질되며 심지어는 최고책임자가 사퇴하는 것이 관례화되었기 때문이다.<sup>29)</sup>

날조보도와 표절과는 달리 오보는 그 사례가 다양하고 그 피해 또한 더욱 광범위하며 막대하다. 김옥조에 따르면, 오보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내리고, 정치인의 정치생명이 오락가락하게 되며, 심지어 [관동대지진 때 경우와 같이] 수많은 생명이 억울하게 희생되기도 한다. 오보로 인해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죄 없는 사람이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 밝혀져서는 안 될 사생활의 공개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기도 한다.”<sup>30)</sup> 인터넷 언론과의 속보 및 특종 경쟁이 그리 심하지 않던 1999년에 언론연구원(현 언론재단)이 오보의 원인에 대해 703명의 기자를 대상으로 한 의식 조사에 의하면, 오보는 ‘사실관계 미확인’이 61.7%, ‘기자의 실수 및 부주의’가 22%, ‘구조상의 제약’이 11.7% 등의 순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1)</sup>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오보의 원인에 대한 순위는 오보에 대해 각 언론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해법을 어느 정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 미확인’이나 ‘기자의 실수 및 부주의’에 의한 오보는 언론사 내의 자체점검 시스템을 구축하면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언론의 오

27) “기사 표절 사과합니다”. <조선일보>, 2005년 9월 28일, 2면. 기사가 아닌 사실의 표절로 논설위원이 경질된 경우는 2001년 4월 <한겨레>와 2004년 5월 <경향신문>의 경우가 있다.

28) 문화일보, 2005. 9. 25. 자. “‘기사표절’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29) 한국일보, 1991. 7. 20. 자. “표절 물의 일 공동통신 사장 사임”. 아사히신문의 날조기사 게재사건과 관련해서는 아사히신문의 현직 사장뿐만 아니라 전직 사장 겸 임원상담역을 맡았던 일본신문협회 회장까지 사퇴하는 등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더욱 철저한 자기반성적인 인사교체가 진행된다. 한국일보, 2005. 9. 9. 자. “일 언론의 오보반성”.

30) 김옥조(2004), 앞의 책, p.221.

31) 한국언론재단(1999), 「한국의 언론인」, 서울: 한국언론재단, p.84.

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는 반드시 존재하는 만큼 그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구제조치가 있다.<sup>32)</sup> 그러나 오보의 방지를 위해서는 언론사 내의 엄한 징계 조치와 아울러 제도적인 점검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오보에 대한 언론사 내의 징계조치는 엄격하고 명명백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오보의 주된 원인인 '사실관계 미확인'에 의한 오보가 발생하였을 때 미국 언론의 경우 가장 최근의 오보사례의 피해자(?)는 취재원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해서 85일 동안 수감생활을 했던 밀러(Judith Miller) 기자이다. 밀러는 취재원을 보호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감옥행을 택했다는 점에서, 적어도 85일 동안은, 투철한 기자정신의 표상으로 여겨졌다. 1977년부터 <뉴욕타임스>에서 국가안보 탐사전문기자로 2002년 풀리처상까지 수상한 밀러는 부시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흘리는 이라크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정보를 토대로 이라크와의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기사를 <뉴욕타임스>에 실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들이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자신이 받은 정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부시 정권의 이라크 침공에 명분을 제공하였다는 비판을 다른 언론매체도 아닌 자신이 소속된 <뉴욕타임스>에서 받아 결국에는 기자

직을 사임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사임사유를 밝힌 글에서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자신의 보도가 오보였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했다.<sup>33)</sup>

미국에서 오보에 따른 기자의 징계는 일견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2004년 대선을 앞두고 두 차례의 오보사례가 발생했다. 그 중 하나는 폭스뉴스가 민주당 후보였던 존 케리 상원의원이 매니큐어 칠하기를 즐기는 “메트로섹슈얼(metrosexual)”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웹사이트에 올린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CBS의 대표적인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60분 II>(60 Minutes II)의 부시 대통령의 병역특혜 논란 보도이다. 두 보도 모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기자의 실수 또는 부주의에 의한 것이었다. 폭스뉴스는 “악의보다는 [기자의] 피로와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 기사가 웹사이트에 올려 졌다고 정정보도문에서 밝히면서, 그 기사의 책임자인 정치부 수석기자인 칼 캐머론(Carl Cameron)을 징계했다고 밝혔다.<sup>34)</sup> 또한 CBS의 경우에는 CBS 저녁뉴스의 간판 앵커이자 문제가 된 방송 프로그램의 진행자였던 댄 래더(Dan Rather)는 지극히 수동적인 역할만 하였으므로 CBS 저녁뉴스 앵커자리만 내놓는 상징적인 징계를 하였지만, 보도와 관련된 최고 간부급 인사 4명은 즉각 해고시키는 중징계를 취하는 조치로 오보에 대처했다.<sup>35)</sup>

정치적으로 굵직한 이슈에 관한 방송사의 정치적

32) 2005년 1월 27일에 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방송사와 일간신문 및 뉴스통신업자는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하여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오보에 의한 피해자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언론사와의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제24조), 중재판결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제25조)고 하였다. 물론 오보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제26조), 재판부는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제27조 제1항, 제3항) 규정하고 있다. 언론의 악의적인 왜곡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도 향후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오보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본다.

33) 한겨레, 2005. 11. 11. 자. “‘리크게이트’ 밀러 기자 결국 사직”.

34) 박재현(번역), “폭스뉴스, 케리후보 발언 조작기사 정정보도”, <Media Worldwide>, 2004년 11월호: 4-5쪽.

35) 홍수원(번역), “CBS, 부시 병역특혜 논란 보도와 관련 사과”, <Media Worldwide>, 2004년 11월호: 6-9쪽. Jacques Steinberg and Bill Carter, “Placing Blame: The Overview: CBS Dismisses 4 Over Broadcast on Bush Service”, <New York Times>, Jan. 11, 2005.

신속한 정정보도와 자체적인 후속대책  
 마련이 오보로 인한 신뢰성 상실과  
 유·무형의 피해를 최소화

편향성을 드러낸 오보뿐만 아니라 사소한 사실관계 미확인으로 인한 오보의 경우도 궁극적으로는 언론사의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은 미국 언론(학)계가 인식하는 바이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언론학부 카펠라 교수와 제이미슨 학장은 특히 정치 전반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증가되는 것은 정치에 관한 정보를 경쟁 전략적 보도(strategic reporting)형태로 대중에게 전달하는 언론에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경쟁 전략적 보도는 선정적 보도(28%), 편향적 보도(22%) 그리고 오보(15%)로 인식되어 언론의 신뢰도 하락은 물론이려니와 대중의 정치에 대한 냉소감(cynicism)과 민주주의 전반에 대한 회의감(skepticism)까지로 이어지게 된다고 주장한다.<sup>36)</sup>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오보는 물론 날조 및 표절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언론사 내에 구축할 것인가? 우선 시걸위원회의 보고서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시걸위원회 보고서(Siegal Committee Report)란 <뉴욕타임스>가 자사 기자 제이슨 블레이어(Jayson Blair)가 다른 신문 기사를 표절하거나 가공의 취재원을 이용해서 기사를 작성한 것이 드러나자 블레이어는 물론 담

당 편집인과 편집국장이 사직한 후, 편집부국장인 앨런 시걸(Allan Siegal)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자와 기사 심의기준 그리고 편집국 문화의 3가지 시스템적인 보완에 대한 개혁안을 제시한 것이다.<sup>37)</sup>

시걸위원회 보고서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뉴욕타임스>가 취한 3가지 시스템적 변화들을 살펴보면, 첫째, 비보도 보장성(off-the-record) 인터뷰와 익명의 취재원을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고 익명취재원에 의거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 적어도 데스크에는 알려야한다.<sup>38)</sup> 둘째, 표절기사는 편집국 내의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sup>39)</sup> 일선기자들과 편집간부 및 경영진과 “신선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독자의 입장에서 신문기사와 논평을 분석·비판하고 정기적으로 지면을 통해 활동을 알리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 편집인(public editor)의 활동과<sup>40)</sup> “취재 과정의 청렴성”과 “윤리규정을 준수하는지를 감독”하는 기준감독 편집인(standard editor)의 활동을 적극 독려한다.<sup>41)</sup> 셋째, 시대적 변화에 걸맞은 윤리강령을 구체적인 사항까지 개정하여 일선기자들이 취재할 때 즉각적으로 참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

36) Joseph N. Cappella & Kathleen H. Jamieson, *Spiral of Cynicism: The Press and the Public Goo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p. 210.

37) 동아일보, 2005. 5. 11. 자. “뉴욕타임스 ‘익명 취재원 줄이겠습니다’ ... 독자 신뢰회복방안 발표”.

38) <Editor & Publisher>, 2004년 5월호. 이종욱(편역), “자체점검 수준 강화하는 NYT, WP, USA투데이: 편집인에게 익명취재원 고지 의무 부여” <Media Worldwide>, 2004년 7월호: 13-17쪽에서 재인용. 표절을 근절하기 위해서 코네티컷주의 하트포드 쿠란트(<The Hartford Courant>) 신문사의 경우, 사설-여론면(Op-Ed)에 대한 새로운 표절 탐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사용하여 주립대 총장이 기고한 칼럼이 표절되었다는 것을 밝혔다고 한다 (16쪽).

39) 백병규(편역), “뉴욕타임스 기자표절 - 편집국 의사소통 부재가 주원인”, <Media Worldwide>, 2003년 6월 호: 4-9쪽.

40) 조선일보, 2004. 7. 14. 자. “NYT, 외부영입 공익편집인제로 신선한 긴장”. 공익편집인으로 인해서 “신선한” 긴장이 아닌 갈등적 긴장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월 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도 있다. 동아일보, 2004. 7. 4. 자. “NYT 공익편집인, 신문체면 살리라니까 되레 칼질”. 안기택(편역), “마이니치 ‘열린신문위원회’ 내외부 반향 커: 파격적인 독자비판 수용, 반영 등”. <Media Worldwide>, 2004년 7월호: 8-12쪽에는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이 도입한 열린신문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

41) 김종수(편역), “‘윤리 타임 아웃’ 과 ‘스탠더드 에디터’ 운영: 미국 신문기사 조작사건 후 변화된 편집국”. <Media Worldwide>, 2005년 6월호: 24-27쪽.

면 개정된 <뉴욕타임스>의 윤리강령은 “취재대상이 될 수 있는 어떤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25달러(3만원) 가치가 넘는 선물·티켓·할인권·비용 등을 제공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이른바 ‘떡값형’ 춘지의 상한선까지 제시하는 등의 구체성을 갖추었다.<sup>42)</sup>

오보와의 전쟁을 선언한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취임 직후 행정 각 부처는 “자기 부처의 업무와 관련한 언론보도를 망라해 청와대에 보고하되 오보성 기사와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사안별 대응조치 내용도 함께 보고하라”고 지시했다.<sup>43)</sup> 청와대가 지나치게 언론의 비판을 오보라고하며 사사건건 언론중재 및 소송에 치중한다는 비난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적어도 청와대가 언론 오보의 피해자를 차치하며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은 “청와대가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지 몰라도 최소한 한국 언론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sup>44)</sup>

오보구제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신속한 정정보도이다.<sup>45)</sup> 인쇄매체의 경우 가급적 오보가 나간 지면이나 위치에 그리고 방송뉴스의 경우에는 오보가 된 이슈의 중요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될 수 있는 한 방송을 시작하며 정정보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반론보도와는 달리 정정보도는 그 주체가 언론사이기 때문에 사과의 뜻이 담겨야함은 물론이다. 오보에 의한 정정보도를 자주 낸다는 것은 기자 개인에게는 감봉의 원인이 되기도 하겠지만,<sup>46)</sup>

궁극적으로는 오보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개별 언론사의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sup>47)</sup>

### III. 소 결

신문윤리강령, 기자협회 윤리강령, 방송프로듀서 윤리강령, 신문광고윤리강령 등 외국에서도 부러워할 만큼 잘 갖추어진 윤리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에서 계속해서 취재윤리 위반사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언론(계) 전체가 비난과 질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홉스(Hobbes), 로크(Locke), 루소(Rousseau)를 거치며 인권의 확장적 개념의 발전에 근간이 되었던 언론과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는 이제 적어도 신문의 기사와 방송의 프로그램의 영역에서는 개인의 인격권이라는 가치와 상충되게 되었다. 단지 개인의 인격권이라는 개념이 지고(至高)의 가치라서가 아니라 타율적 규제가 없는 소극적(부정적) 의미를 가진 “freedom from(government restraint)”적 언론의 자유라는 개념에서 이제는 적극적(긍정적)인 뜻을 내포한 “freedom for(democratic self-government)”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언론의 책임을 묻는 것(accountability)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취재 및 보도의 윤리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일괄적인 기준(categorical standard)을 정하는 일은 가

42) 기자협회보, 2003. 6. 30. 자. “가혹한(?) 뉴욕타임스의 윤리강령”; 미디어뉴스, 2003. 7. 8. 자.

43) 김옥조(2004), 앞의 책, p.222.

44) 최영재·김남두, “언론의 오보·편파보도 생산구조” <저널리즘 평론: 오보>, 한국언론재단, 2003년, p.75.

45) 우리나라 신문윤리강령 제6조는 오보에 대하여 “독자들에게 답변,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실천요강 제10조 제5항에는 “편집자는 사실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독자가 잘못된 사실의 정정을 요구할 경우 그 내용을 신속히 그리고 뚜렷하게 게재해야 한다”고 하였다.

46) 우승용(편역), “‘오보 많으면 감봉’: 언론윤리 극복 방안” <Media Worldwide>, 2003년 8월호: 46-50쪽.

47) 강명구·양승목·염기열(2001), 「한국언론의 신뢰도: 위기 현황분석과 극복 방안」, 서울: 한국언론재단.

**비윤리적 취재 · 보도행위가  
자신들은 물론 언론 전반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능하지도 않고 또한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러므로 윤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사안별 · 상황별로 비교형량(ad hoc balancing)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러한 비교형량을 하는데 있어서 도덕(철)학자(ethicist) 시셀라 보크(Sissela Bok)가 제안한 3가지 단계의 고려할 사항은 윤리적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어떤 취재행위가 정당한가는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고민해야 한다. 둘째, 윤리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취재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동료, 상사 또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다. 셋째, (앞서 언급한 ‘윤리 타임아웃’과 비슷한 형태의) 자유로운 토론과 대화를 가능한 한 취재 · 보도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과 공개적으로 한다. 자유로운 토론과 대화를 많이 하여야 하는 이유는 기자로서 자신의 행동이 취재원들이나 자신의 동료 기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보크가 비록 취재와 보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3단계의 성찰과정을 거치게 되면 취재 · 보도에 대한 윤리성 점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sup>48)</sup> 이러한 개인적 차원에서의 윤리점검 뿐만 아니라 집단적 차원의 취재윤리 제고를 위한 보크의 조언은 “회황찬란한 윤리강령”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경쟁매체보다 앞서 보도하거나 특종기사를 쓰는 일이 언론윤리에 충실해야 한다는 당위적 가치와 항상 병행되는 환경을 언론사 고위간부와 경영진이 반드시 조성해야 한다고 하였다.<sup>49)</sup>

언론인의 도덕성과 직업윤리는 매우 중요하다. 보수적 성향의 언론인이든 진보적 성향의 언론인이든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취재 · 보도 행위는 자신들은 물론 언론 전반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타율적 규제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도덕적 재무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취재와 보도의 단계에서는 물론 판매부수 또는 시청률 경쟁의 전략을 구상하는 경영적 측면의 단계에서도 자체적 윤리점검 시스템을 통해서 윤리성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다. □

48) Sissela Bok, *Lying: Moral Choice in Public and Private Life*, New York: Random House, 1978. 필립페터슨 · 리 윌킨스, <언론윤리: 이론과 실제>, 장하용(역), 동서학술서적, 2000년, 20-24쪽에서 재인용.

49) Kelly McBride, <Poynter Ethics Journal>, 2003년 5월 1일자 포인터연구소 홈페이지. 신윤진(편역), “미 솔트레이크 트리뷴 기자 돈 받고 취재원 정보 팔아” <Media Worldwide>, 2003년 6월호: 10-13쪽에서 재인용.